



주민용
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지역사회 고지 제도


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지역사회 고지 제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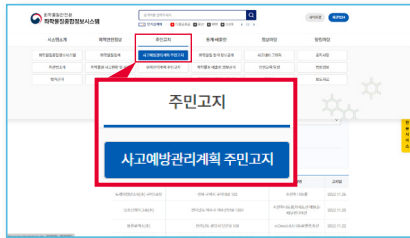
책임운영기관
환경부
화학물질안전원

지역사회 고지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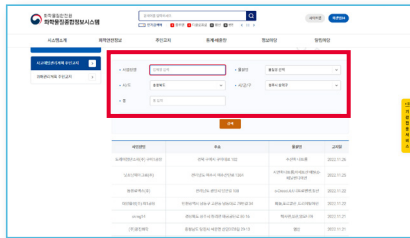
https://icis.me.go.kr



1 화학물질종합정보
시스템 접속



2 주민고지- 사고
예방 관리계획서
주민고지



3 검색조건에 맞게
검색
※ 사업장명, 물질명,
지역



4 원하는 사업장
선택



5 상세정보 확인

책임운영기관
환경부
화학물질안전원

(우)28164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 11로 270
대표전화 : 043-830-4000

지역사회 고지 제도란?

유해화학물질을 규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와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알기 쉽게 알려야 하는 제도

근거

-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
-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
-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

고지 대상

-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* 적합 사업장이 사고 시나리오 총괄영향범위 내 지역주민 및 인근 근로자에게 고지
- * 유해화학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을 상위규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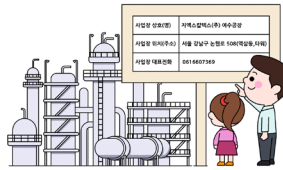
고지 확인

- 시스템 고지
 - ▶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(<https://icis.me.go.kr>)
- 그외 고지
 - ▶ 사업장에서 아래 방법 중 한가지 이상으로 제공
 - ① 서면(개별)통지 : 우편, 전자우편
 - ② 개별설명
 - ③ 집합전달 : 공청회, 설명회 등
 - ④ 지자체 게시판, 반상회보, 소식지, 누리집 등 게재
 - ⑤ 주민협의체, 공동주택관리사무소, 이통장 등 전달

고지 시기

- 최초 고지
 - ▶ 시스템 고지 : 적합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
 - ▶ 그외 고지 : 적합 받은 당해 연도 이내
 - ※ 다만, 적합 받은 해당연도가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, 적합 후 6개월 이내 고지
- 정기고지
 - ▶ 최초고지 다음연도부터 매년(1.1~12.31) 1회 이상
 - ※ 정기고지 시기는 시스템 고지와 그외 고지 동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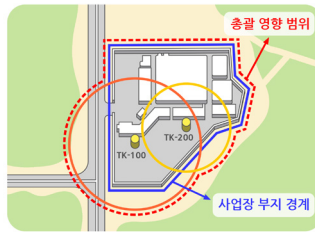
지역사회 고지 내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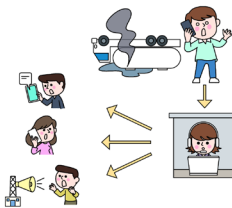
- ▶ 사업장 정보 (사업장명, 주소, 대표전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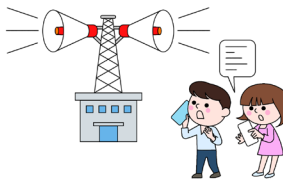
- ▶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대표유해성 정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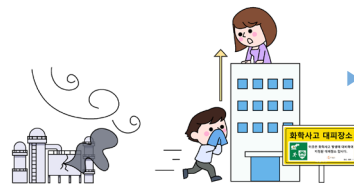
- ▶ 사고시나리오 총괄영향범위
 - * 영향범위: 화학사고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화재·폭발 또는 유출·누출되어 사고지점으로부터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



- ▶ 비상연락체계



- ▶ 사고 발생 시 대피경보 방법



- ▶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장소 및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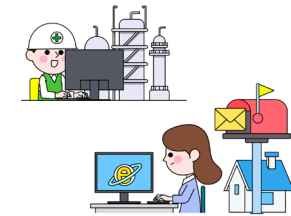
지역사회 고지 방법

시스템 고지



- ▶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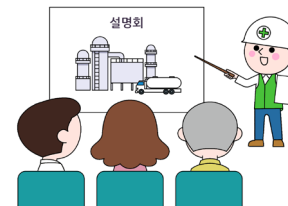
그외 고지 (한가지 방법 이상 선택)



- ▶ 서면(개별)통지 (사업장이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)



- ▶ 개별 설명 (사업장이 1:1 설명)



- ▶ 집합전달 (사업장이 공청회나 설명회 등 개최)



- ▶ 그밖의 방법 (지자체 누리집, 소식지, 반상회보 등)